

형사소송법

1. 다음 <보기> 중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 다음 중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3.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 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4.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④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5.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6. 다음 중 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④ 해양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

7.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고지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사건”이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전자대리점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을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9.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도 협의해야 한다.

10.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 ④ 변사자의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관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12. 다음 <보기>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 ㉣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② 세관 검색시 급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의 범행을 시인한 경우, 이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반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15. 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②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행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 ③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 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 ㉤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④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증거보전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21. 다음 중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두변론주의 원칙상 판결, 결정, 명령은 구두 변론을 거쳐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③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 ④ 공판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슈퍼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과자를 주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자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끌어당겨 앉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꼭 붙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나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필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축소사실의 인정 사안과 차이가 있다.
- ② 항소심 단계이므로 검사는 강제추행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하기 위해 공소장변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양형사유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참작할 수 없다.

23. 다음 중 공소장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분을 송달해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라면 이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후 공판기일을 상당기간 연기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사선변호인의 출정없이 공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하다.

24. 다음 <보기> 중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에 따라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취소할 수 있다.
-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5. 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③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에 대해 선서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26. 다음 중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적법한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는 의무사항인바, 법원은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의무사항인바,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 ③ 병합심리신청이 있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7.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린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8. 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물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범의 소송 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④ 유죄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사실의 특징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

29. 다음 중 재판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결은 상소로서 불복할 수는 없지만 판결정정이 인정되므로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후 확정된다.

②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 항고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된다.

④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30.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

②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에 관해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③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 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죄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1. 검사는 공소장에 A죄, B죄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甲을 공소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이후 항소심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A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B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심법원은 판결주문에서 무죄로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 ② 항소심법원은 A죄에 대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만일 항소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및 법령적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 ④ 만일 1심법원이 B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면 검사는 A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32. 다음 중 상소권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면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③ 피고인에게 교도소 담당직원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아 법률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상소제기기간을 경과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검사는 甲에 대하여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양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일 항소심이 B죄를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 죄는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은 A죄 유죄부분도 파기하고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만일 검사가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무죄부분에 대한 일부항소로서 무죄부분만이 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만일 항소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④ 만일 항소심에서 양 죄의 관계가 과형상 일죄인 것으로 죄수판단이 변경되었다면 A죄 유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4. 다음 중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 ④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해 법률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1심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다음 중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한다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없다.
- ④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의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은 더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6. 甲, 乙은 각각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 甲은 정식 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서에 甲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였다. 이를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은 甲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乙은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② 만일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甲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은 乙에게 공소장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④ 乙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7.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증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 ④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8. 검사는 甲을 A죄, B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1심에서 A죄, B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죄에 대하여 甲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 CCTV가 발견되었다. 이에 甲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 A죄에 대하여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재심심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④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고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39. 甲은 A를 상해하였다. 그때 X는 친분이 있던 A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 그 후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X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가 들은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X가 목소리를 청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러한 증언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

③ X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러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인바, X가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40.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지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의 진술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그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 보험사기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